

지하철 역사 유희공간 창업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2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민에게 다양한 창업문화를 전파하고, 창업가에게 아이디어 상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카페를 설립하였으며,
- 나. 해당 카페의 운영을 창업 전문성, 노하우,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시설명 : (가칭) 창업카페
- 소재지 : 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지하5층
- 시설규모 : 116㎡ (약 35평)
- 공간구성 : 제품촬영실, 홍보물 제작 및 개방형 창업공간, 창업상담실 등
- 위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6.4.1. ~ 2019.3.31.)
- 위탁사무 : 창업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(교육, 행사, 홍보 등)
 - 관리 인력 선발 및 운영, 시설물 유지 관리
 - 주변 대학 및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교류·협력 등
- 소요예산 : 연간 200,000천원 ('16년 예산 157,031천원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

- 청년층의 창업 지원 및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·의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으며 창업관련 전문 지식·보육경험 등이 요구되는 사무
- 창업지원 분야는 민간기관(대학)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생태계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 바,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

제63조(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 "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5.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

○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18조 제2항 1호 ~ 3호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18조(일자리 지원시설)

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창업 보육공간 지원, 정보제공, 교육,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2. 창업 자금 및 전시·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
3.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6년 예산편성 및 2017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창업지원과 창업정책팀 이후락 (☎ 2133-5511)